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‘퇴직(해임·해고)자 통보서’ 중 실효성이 낮은 항목인 ‘신원이상’을 삭제하고 중복된 내용인 ‘건강이상’과 ‘상이처재발’을 건강이상으로 통합하는 등 취업지원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0호서식의 퇴직 사유 또는 해임·해고 사유란을 아래와 같이 한다.

퇴직 사유 또는 해임·해고 사유							
제 적·사 망	[]	휴 업·폐 업	[]	전 직	[]	근무조건 불만	[]
건 강 이 상	[]	인 수·합 병	[]	자 영	[]	무 단 결 근	[]
정 년 퇴 직	[]	고용조정(정리해고)	[]	퇴 직 금 수 령	[]	근무태만(불성실)	[]
의 원 면 직	[]	임금체불(3개월 이상)	[]	능력개발·교육	[]	부 정 행 위	[]
명 예 퇴 직	[]	용 역 전 환	[]	저 임 금	[]	범 죄 행 위	[]
기 간 만료	[]	거 주 이 전	[]	능 력 부 족	[]	그 밖의 사유	[]
가 구 원 간 병	[]	회 사 이 전	[]	적 성 부 적 합	[]		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